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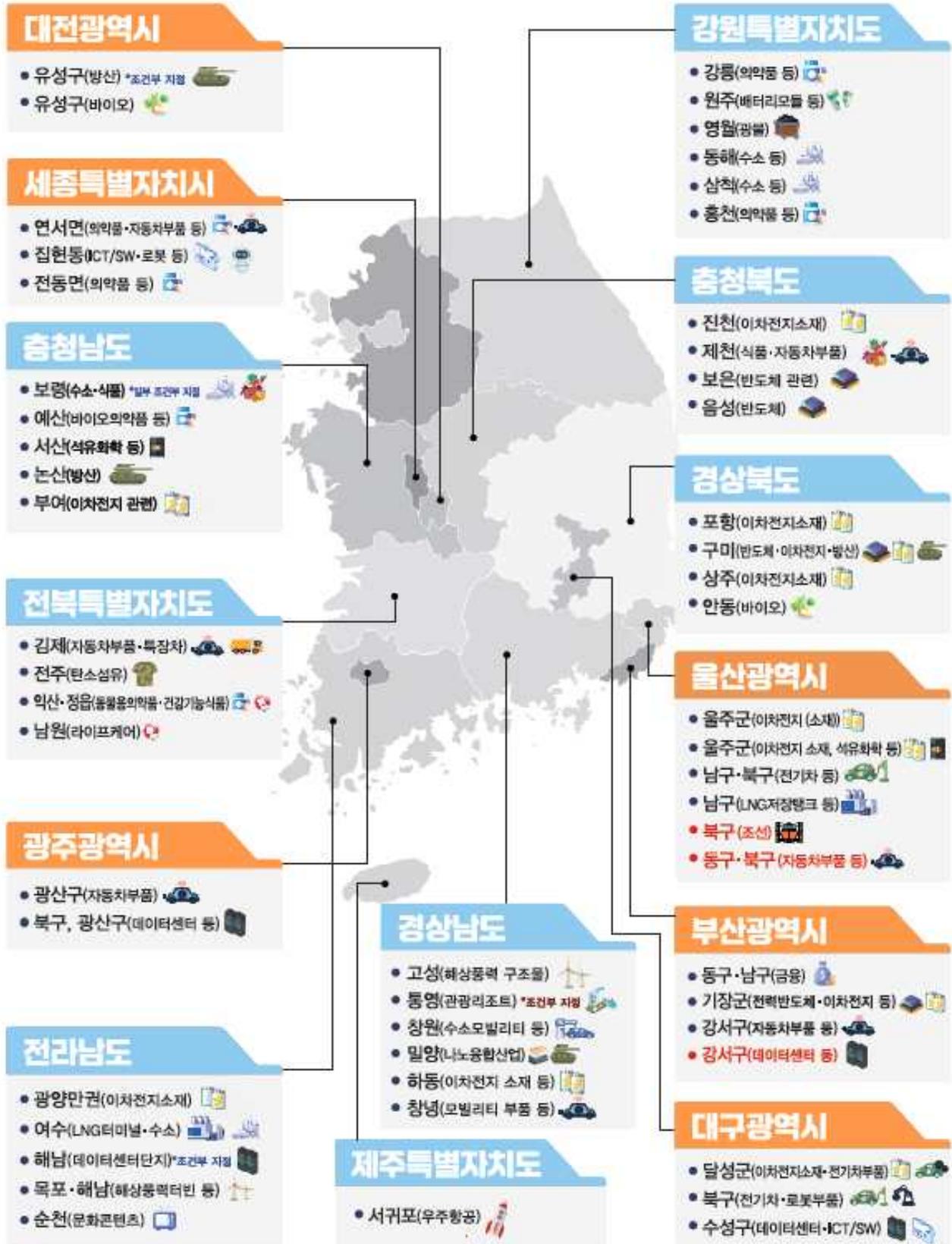
## 기회발전특구 R&D 지원내용

- **(지원목적)** 기업의 사업활동(사업장 구축, 인력 유치 등)이 지방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상용화 및 시장진입에 필요한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지방 이전·신증설 등에 따른 초기 투자한계 극복 및 지역자립기반 마련
- **(지원대상)** 기회발전특구 투자이행 (착공 이후) 기업 (참고 : 착공→준공→완공 등)
  - \* 기회발전특구지정을 위하여 지방정부와 투자 예정기업이 협의(MOU, LOI 등)하여 지정된 지역에 착공하여 투자를 이행한 기업 (기회발전특구 개요 참고)
- **(산업분야)** (1순위) 지역혁신클러스터 특화산업 / (2순위)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산업분야(붙임 기회발전특구 전체 지정 현황 산업분야 참조)
  - \* 1순위를 우선으로 하되 공모상황 등을 고려하여 2순위까지 허용
- **(지원방식)** 자유공모 (기회발전특구 산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 지원)
  - \* 과제당 7억원/년(1차년도 5억원 최대3년) / 지원규모, 기간, 연구내용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
- **(지원내용)**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의 사업화 및 연구기반 마련을 위한 R&D지원
  - (사업화지원) 투자기업 제품·서비스의 시장진출을 위해 실증, 상용화 등 R&D지원
  - (연구시설구축)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기업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·장비 구축 지원\*(공동활용장비, 기반구축장비·시설은 제외)

| 구분        | 지원항목               | 지원내용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|
| 사업화 R&D지원 | 기술이전 및 사업화         | 공공기관 또는 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도입하여 자사 제품·공정에 적용 및 고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기술 Scale-up 및 공정개발 | 개발 초기 단계 기술을 양산 가능한 수준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파일럿 테스트, 공정 최적화, 생산체계 구축 등 지원          |
|           | 첨단기술확보R&D          |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도입하여 자사 제품·공정에 적용 및 고도화할수 있는 기술이전R&D 지원             |
|           | 규제해결R&D            | 특구내 기업의 사업화에 따른 규제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시험·인증 및 R&D실증 지원을 통해 시장 진입 가능성 확보          |
|           | 민간자금 매칭 사업화R&D     | 특구 투자기업에 대한 민간투자자금을 매칭으로 R&D사업화 성과 제고 및 신사업 개발 촉진                        |
| 연구시설 구축   | 소규모 연구시설·설비조성 지원   | 소재 합성, 부품 조립, 공정 실험 등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 수행이 가능한 연구시설·설비 조성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연구장비 도입 지원         | 기업의 기술개발의 정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, 핵심 분석·제작 장비를 신규 도입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파일럿 테스트 및 실증설비 구축  | 시제품 수준 기술을 검증하고 상용화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, 중간 규모 테스트베드 및 실제 사용 환경에 기반한 실증설비 구축 지원 |

# 참고

# 기회발전특구 전체 지정 현황( 26.2월 기준)



5차 부산(강서구) / 울산(북구, 동구)

## 참고

## 기회발전특구 특화산업 (특구투자기업 산업분야)

| 권역명     | 지역명     | 특화산업  |
|---------|---------|---|
| 중부권     | 충청남도    | 바이오 의약품, 방산, 석유화학, 수소, 식품<br>이차전지 설비 등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충청북도    | 반도체, 식품, 자동차부품, 이차전지 소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대전광역시   | 바이오, 방산   |
|         | 세종특별자치시 | ICT/SW, 로봇, 의약품 등<br>의약품, 자동차 부품                      |
| 서남권     | 광주광역시   | AI, 데이터, 자동차 부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전라남도    | LNG터미널, 수소생산·발전, 데이터센터, 문화콘텐츠<br>이차전지 소재, 해상풍력 터빈     |
| 동남권     | 부산광역시   | 디지털 금융, 전력반도체, 이차전지,<br>친환경자동차 부품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울산광역시   | 석유화학, 이차전지, 친환경 에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경상남도    | 관광, 문화, 나노융합산업, 모빌리티 부품 등<br>수소, 모빌리티, 이차전지 소재, 해양플랜트 |
| 대경권     | 대구광역시   | 디지털, 미래차, 로봇, 이차전지, 모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경상북도    | 반도체·이차전지, 방산, 이차전지, 첨단 바이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강원도     |         | 광물, 배터리 모듈, 수소, 의약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전북특별자치도 |         | 동물의약품, 건강기능식품, 탄소소재, 특장차,<br>자동차부품, 화장품, 건강기능식품       |
| 제주특별자치도 |         | 우주항공  |

※ 특화산업은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산업분야이며, 투자진행상황에 따라 변동가능

- (개념)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·재정지원, 규제특례,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\*
  - \* 「지방분권균형발전법」 제2조(정의)에 따라 개인·법인의 **대규모 투자**를 유치하기 위해 **“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곳”**으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산업부 장관이 고시
- (대상지역)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(인구감소지역, 접경지역)
  - (입지) 지방정부가 투자예정 기업과 협의하여 입지 선정
    - \* 산업단지, 경제자유구역, 기업도시 등 既 조성된 계획입지, 개별입지 등 모두 가능
  - (면적) 시·도별 면적 상한(광역시: 4.95km<sup>2</sup>(150만평), 도: 6.6km<sup>2</sup>(200만평)) 내에서 복수의 특구 신청 가능
- (지정절차) 지방정부(시·도지사)가 투자 예정 기업과 협의하여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 후 산업부 장관이 지정
- (지정요건) 기업의 입주수요, 근로자 정주여건, 기반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 가능성, 지역 주요 산업과의 연계 발전 가능성 등
- (지원내용) 세제·재정, 정주여건 개선 등 패키지 지원
  - ①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 시 양도차익 소득·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
  - ② 특구 내 가업상속시 ‘업종변경 제한’ 및 ‘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’ 폐지 등 사후관리요건 완화
  - ③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 및 특구 내 창업을 위한 사업용 부동산 매입 시, 공장 신·증설 시 취득세·재산세 감면
  - ④ 특구 내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 시 법인세 감면
  - ⑤ 특구 투자 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 가산 등